

## 채무조정 안내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### □ 요청대상

#### ㉠ 대상자

-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며 현재 원금 혹은 이자를 연체 중인 자 (동일 담보물로 여러건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 대출금을 통합하여 고려함)

#### ㉡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#### 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㉑ 요청방법
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㉒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\*
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당행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\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□ 채무조정 내용

채무조정 내용			
상환유예	상환기간 연장	이자율조정	채무감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1년(6개월단위)</li> <li>▶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10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(하한3.2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원금 0%~30% 감면</li> <li>▶ 연체이자, 이자 감면</li> </ul>

□ 채무조정 절차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<p>(채무자)</p> <p>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</p>	<p>(은행)</p> <p>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</p>	<p>(채무자)</p> <p>은행이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</p>	<p>(은행)</p> <p>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</p>	<p>(채무자)</p> <p>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</p>

## □ 변제계획 불이행시 안내

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## 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기준안내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1. 3개월 이상\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
\* 당행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 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5. 채무자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## 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과산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 채무조정 요청서

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00은행	000-0000-00	'22. 6. 1.	10,000,000

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기타			
<input type="checkbox"/> ( )			

## □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- 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  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  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- 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- 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◇ 본 채권금융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조치 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000(☎0000-0000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\_\_\_\_\_ (인)

## 채무조정안(채무자용)

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홍길동	75. 9. 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 (D)
회사원	(A)	(B)	(C)	(D) = (A)-(B)-(C)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채무조정 요청대상

채권금융회사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00은행	000-0000-00	'22. 6. 1.	10,000,000

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상환 유예	(Y/N)	희망 유예기간	
		00 개월	
만기 연장	(Y/N)	희망 변제기간	
		00 개월	
이자율 인하	(Y/N)	이자율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15%	9%

원금 감면	(Y/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10,000,000	9,500,000
이자 감면	(Y/N)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연체이자 감면
기타 사항	(Y/N)	-(상환방법 변경) 원리금균등상환방식→만기일시상환방식 -(변제금충당순서 변경) 비용, 이자, 원금 순서 →비용, 원금, 이자 순서	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\_\_\_\_\_ (인)



## 채무조정안(채권자용)

신청인 기본정보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 9. 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채무조정 사항

<input type="checkbox"/> 상환유예	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연장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율 인하
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 감면(이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 감면(연체이자)
<input type="checkbox"/> 상환방법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변제금충당순서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기준에 따른 조정사항

조정안

(단위 : 원)

대출명	계좌번호	조정	원금	비용	이자	연체이자	합계	이율
		전						
		후						

변제계획

(단위 : 원)

<b>상환 유예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( Y/N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기간 : 6개월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이자 : 10,000(월)	<b>상환방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원리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)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

<b>상환기간</b> <b>(상환개월)</b>	년 월 일 ~ 년 월 일 (60개월)	<b>납입시작일</b>	년 월 일
<b>매월 납입일</b>	20일	<b>월납입액</b>	500,000

□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 1. 3개월 이상\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
\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 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 5. 채무자가 HSBC 서울지점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희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년 월 일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장 : \_\_\_\_\_ (인)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(봉래동1가, HSBC빌딩)  
(홈페이지: [www.hsbc.co.kr](http://www.hsbc.co.kr), 대표전화 : 1544-3311)

## 채무조정 결과통지문(승인)

항상 저희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'채무조정'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: 02-000-0000

###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### 채무조정 승인 대출

(단위 : 원)

계좌번호	잔액	대출일자
000-0000-00	10,000,000	'22. 6. 1.

### 유의사항

-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.
-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

끝난 것으로 봅니다.

<붙임1> 채무조정안

년 월 일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(봉래동1가, HSBC빌딩)  
(홈페이지: [www.hsbc.co.kr](http://www.hsbc.co.kr), 대표전화 : 1544-3311)

## 채무조정 결과통지문(거절)

항상 저희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한 '채무조정'이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 :           전화번호 : 02-000-0000

###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홍길동	75.09.10.	010-	서울특별시 중구

### 거절사유

<input type="checkbox"/> 당사 채무조정 합의해제 (최근 3개월)	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의 소송, 조정, 중재 등 절차 진행중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중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중	<input type="checkbox"/> 당사 수정·보완 요청 3회 이상 불응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멸시효 완성
<input type="checkbox"/>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재요청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내부기준에 따른 거절사유

###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년 월 일

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(봉래동1가, HSBC빌딩)  
(홈페이지: [www.hsbc.co.kr](http://www.hsbc.co.kr), 대표전화 : 1544-3311)

# 채무조정서

문서번호:

결정일자:

주 소: 우) 04520 서울 중구

발 신: 채권금융회사명

수 신: 홍길동(750910-\*\*\*\*\*) 귀하

제 목: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결정 통지

## 1. 채무조정내역

### 1) 조정내용

(단위 : 원)

대출명	계좌번호	조정	원금	비용	이자	연체이자	합계	이율
		전						
		후						

### 2) 변제계획

(단위 : 원)

<b>상환 유예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( Y/N)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기간 : 6개월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예이자 : 10,000(월)	<b>상환방법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원리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원금균등 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상환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	--

<b>상환기간</b> <b>(상환개월)</b>	년 월 일 ~ 년 월 일 (0개월)	<b>납입시작일</b>	년 월 일
<b>매월 납입일</b>	20일	<b>월납입액</b>	500,000

### 3) 납입계좌정보

입금은행	계좌번호	예금주명
00은행	000-000-0-000	0000

## 2.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

아래에서 정하는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 (채무조정 합의의 해제)

1. 3개월 이상\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
\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5. 채무자가 HSBC 서울지점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귀 사로부터 채무조정을 승인받음에 있어 귀 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 
위와 같이 상환기로 합의합니다.

채무자 : 홍길동 (인 또는 서명)	채권금융회사 : (인)
주민등록번호 : 750910-000000	주소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000
주소 :	

년 월 일

## 채무조정 해제통지서

문서번호:

결정일자:

주 소: 우) 04520 서울 중구

수 신: 홍길동(750910-\*\*\*\*\*) 귀하

제 목: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해제 통지

### 해제사유

<input type="checkbox"/> 변제계획 불이행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종선고
<input type="checkbox"/>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 재산 감소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요청	<input type="checkbox"/> 회생 및 파산 결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채무조정 절차 확정	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사유	

## 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### 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### ■ 법원의 개인파산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